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1.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안 제21조의2)

-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안전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소규모 건축물 등 감리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2.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개정

(안 제22조제3항)

-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사용승인 수수료 기준의 20%로 구분 개정

3.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4조의2, 안 제20조제1항, 안 제25조제3항, 안 별표3)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및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

3. 검토의견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건축허가(신고) 대행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및 안 제20조(가설건축물)제1항, 안 제25조(대지의 조경)제3항, 안 별표3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호에서 허가권자는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안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제3항은 「건축법」 제27조에서 허가권자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우리시는 현재 사용승인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임.
-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됨.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의 구체적인 실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의 협조체계를 마련함.
- 산업부문 미활용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건축위원회 에너지 전문가 위촉 의무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산업부분 미활용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 이용 활성화 장려
- 건축위원회 에너지전문가 위촉의무 삭제(안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삭제
-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 확대(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 위원장을 시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의 기관대표급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하고, 구성위원과 기능을 확대하여 에너지 사업 실행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3. 검토의견

-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일치하는 조문의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0조(산업부문)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임.
- 안 제11조(건물부문)제1항은 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 건축위원회)에서 규정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요건과 맞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안 제21조(위원회 구성)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위원회 구성원을 12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위촉 가능 대상을 전문기관·협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에서 전문기관·협회·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로 개정하는 내용임.
- 동 위원회의 기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시행,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홍보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민간의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실천 지원,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위원회 개최 운영실적은 2015년도 2회, 2016년도 1회로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개정안 개정 등을 심의하고, 안산 에너지 비전 추진사항 보고와 에너지 비전 실행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을 확대하여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의 구체적인 실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 개최 운영횟수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3조(회의)제4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같은 조제5항은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시행 규칙 또는 내부방침 등을 통하여 예산 지원가능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교통오지노선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운송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적자보전 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여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 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량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그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 보전의 상향선을 삭제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2조제1항)

3. 검토의견

- 교통오지노선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명확하게 하고 운송수지 적자금액 보전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2조(재정지원)는 지원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개선명령한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자금액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적자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상향선을 없애는 내용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서 시장은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운행하도록 개선명령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지원은 필요한 사항이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자금액의 100퍼센트 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 버스운행노선 불편사항 민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